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경 료 · 경 정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륜·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온라인 발매 시행('21.8.1) 등에 따른 경주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, 경주 시행의 공정성·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경주사업자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주개최계획서에 “온라인 발매 관련 사항”을 포함하여 규정(안 제3조제1항, 제2항)

나. 경주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경주 종류, 실시방법,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(안 제3조제3항)

다. 정보통신망 이용(온라인)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등 의무 규정(안 제11조의2)

라.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소진한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규모 확대를 위해 경주사업자의 손실보전준비금, 사업준비금 적립률 조정(안 제20조, 제21조, 제28조의2)

마. 선수·심판 자격 등록, 구매제한자의 구매제한에 관한 사무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 마련(안 제28조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의견조회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경륜·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경륜·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주개최일수”를 “경주개최일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(이하 “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”이라 한다) 발매규모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주사업자가”를 “경주사업자가 (경주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진흥공단이)”로 한다.

3. 법 제9조의2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, “합격하여야”를 “합격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하여야”를 “정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급하여야”를 “발급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승자투표권”을 “승자투표권(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마감하여야”를 “마감해야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) ①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, 운영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.

1.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예방을 위한조치에 관한 사항
2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
3. 불법도박으로의 이용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

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은 경주사업자 공동으로 구축,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매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은 경주사업자간 협의로 정한다.

제14조 중 “경주장”을 “경주장(장외매장을 포함한다)”으로, “장소”를 “장소와 제11조의2에 따른 발매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1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”를 “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10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”를 “6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하여야”를 “사용해야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제9조의2”를 “제9조의3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2제5호 및 제6호 중 “2014년 1월 1일”을 각각 “202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등록에 관한 사무
2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에 관한 사무

<부칙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경주의 개최)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경주사업자”라 한다)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(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	제3조(경주의 개최) ①-----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(신설)</u>	3. <u>법제9조의2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</u>
<u>3. 수지예산서</u>	<u>4. 현행 제3호와 같음</u>
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<u>총 경주개최일수를</u> 늘리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②----- ----- <u>총 경주개최일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(이하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) 발매규모를</u> ----- -----.

③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<u>경주사업자</u>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	③----- -----<u>경주사업자가</u> (<u>경주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사</u> <u>업자간 협의를 거쳐 진흥공단</u>)-- -----.
제6조(선수 및 심판의 자격) ①<u>경주</u> 에 나가거나 종사할 선수 또는 심 <u>판으로</u> 등록하려는 <u>자는</u> 진흥공단 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<u>합격하</u><u>여</u> <u>야 한다.</u>	제6조(선수 및 심판의 자격) ①<u>법</u>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 <u>로</u> -----<u>사람은</u>----- -----<u>해야</u> <u>한다.</u>
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 시험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을 정<u>하</u><u>여야</u>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<u>해야 한다.</u>
제7조(선수 및 심판의 등록) ①<u>법</u>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 로 등록하려는 <u>자는</u> 선수·심판등 록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 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 단에 제출<u>하</u><u>여야</u> 한다.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	제7조(선수 및 심판의 등록)①--- ----- -----<u>사람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해야 한다.</u> ②-----

9조제3항에 따른 <u>승자투표권</u> 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.	----- <u>승자투표권(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포함한다)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,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.	③-----해야 한다.
<u>신 설</u>	<u>제11조의2(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)</u> ①진흥공단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. 1.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. 불법도박으로의 이용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

	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은 경주사업자 공동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매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은 경주사업자간 협의로 정한다.
제14조(환급률 등의 게시)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<u>경주장</u>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	제14조(환급률 등의 게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경주장(장외매장을 포함한다)-----와 제11조의2에 따른 발매시스템에-----해야 한다.
20조(손실보전준비금)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<u>1천분의 1</u> 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	20조(손실보전준비금)----- ----- -----1천분의 5를----- -----해야 한다.
제21조(사업준비금)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<u>1천분의 10</u>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	제21조(사업준비금) ①----- ----- -----1천분의 6을 ----- -----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해야 한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수탁사업자의 범위 등) ① (생략)	제23조(수탁사업자의 범위 등) ①

략)	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법 제9조 및 <u>제9조의2</u> 에 따른 승자투표권 및 구매권의 발매	1.----- <u>제9조의3</u> ----- -----
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2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	제28조의2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 의 적립기준: <u>2014년 1월 1일</u>	5.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 의 적립기준: <u>2022년 1월 1일</u>
6.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 립기준 및 용도: <u>2014년 1월 1일</u>	6.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 립기준 및 용도: <u>2022년 1월 1일</u>
7. ~ 9. (생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(신설)	제28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)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를 처리할 수 있다.

	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수 및
	<u>심판의 등록에 관한 사무</u>
	2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자투표
	<u>권의 구매제한에 관한 사무</u>
	<부 칙>
	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116